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 희 걸 의원

존경하는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
김희걸 의원입니다.

지난 10월 15일 본 의원이 발의한
「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본 개정안은 현행 지하도상가 임대보증금을
“월임대료의 24개월분”으로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
“월임대료의 12개월분 이내”로 조정하여

상가 임차인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
관련 조항을 개정한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,
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
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